

주요 노동동향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15년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 증가(전월대비 0.5% 증가)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16.6%), 석유정제(6.6%) 등에서 증가하였고, 전자부품(-6.0%), 금속가공(-32.2%) 등에서는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함(전월대비 0.4%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2.5%), 전문·과학·기술(-0.8%)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7.6%), 부동산·임대(9.5%)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함(전월대비 0.4% 증가).

- ◆ 2015년 8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7.1%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4.8%) 등에서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9.4%)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함(전월대비 1.9% 증가).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7.1% 증가함(전월대비 0.4%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 실적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주택, 사무실·점포 등에서 수주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3.7% 감소함.

- ◆ 2015년 8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8%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8%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상승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 ◆ 2015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7% 상승(생활물가지수 0.1% 감소)
- 2015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04(2010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함(전월대비 0.2% 하락).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주류·담배(50.3%), 음식·숙박(2.5%), 교육(1.8%), 식료품·비주류음료(1.0%)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7.0)과 주택·수도·전기·연료(-1.2%) 등에서는 하락함.
 - 2015년 8월 생활물가지수는 107.81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2% 하락함(전월대비 0.1% 하락).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동분기대비,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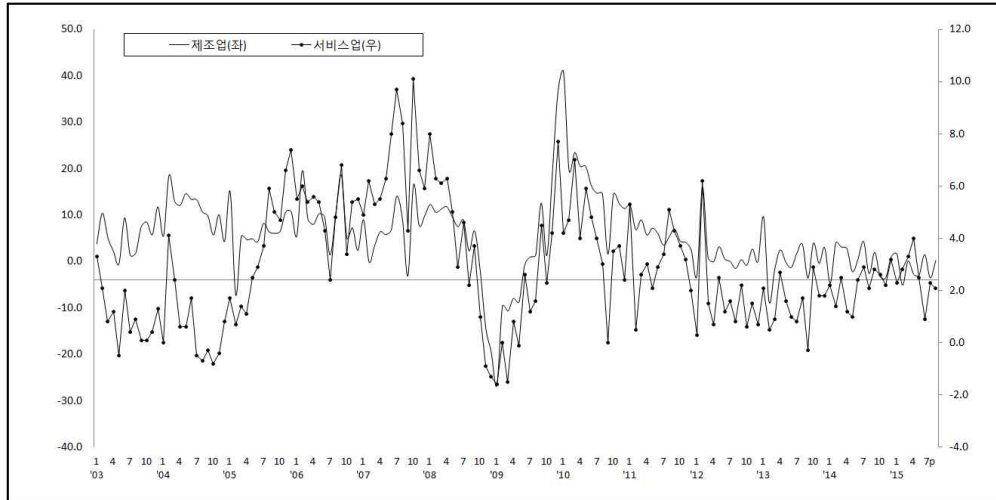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8월	1/4	2/4p	8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1.7	-0.7	0.0	-2.0	0.0	-2.6	-0.9	-1.5	0.3(0.4)
	제조업 생산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1.8	-0.8	0.0	-2.2	-0.1	-2.6	-1.0	-1.5	0.2(0.4)
	출하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2.3	-1.0	-0.2	-1.3	-0.2	-2.8	-0.7	-1.3	0.4(0.3)
	내수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2.8	-1.2	-0.4	-2.6	0.2	-4.2	-0.7	-0.2	0.8(-0.9)
	수출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1.7	-0.6	0.1	0.3	-0.6	-1.2	-0.6	-2.5	-0.1(1.6)
	서비스업 생산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0.8	1.7	0.7	2.7	2.2	2.1	2.8	2.4	2.1(0.4)
소비	소비재 판매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0.2	1.1	0.7	1.9	1.6	2.5	1.6	3.0	1.8(1.9)
투자	설비투자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15.4	-10.0	-4.7	5.1	4.6	-9.8	8.4	5.1	17.1(-0.4)
물가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1	1.6	1.4	1.0	1.3	1.1	0.6	0.5	0.6(-0.2)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5년 9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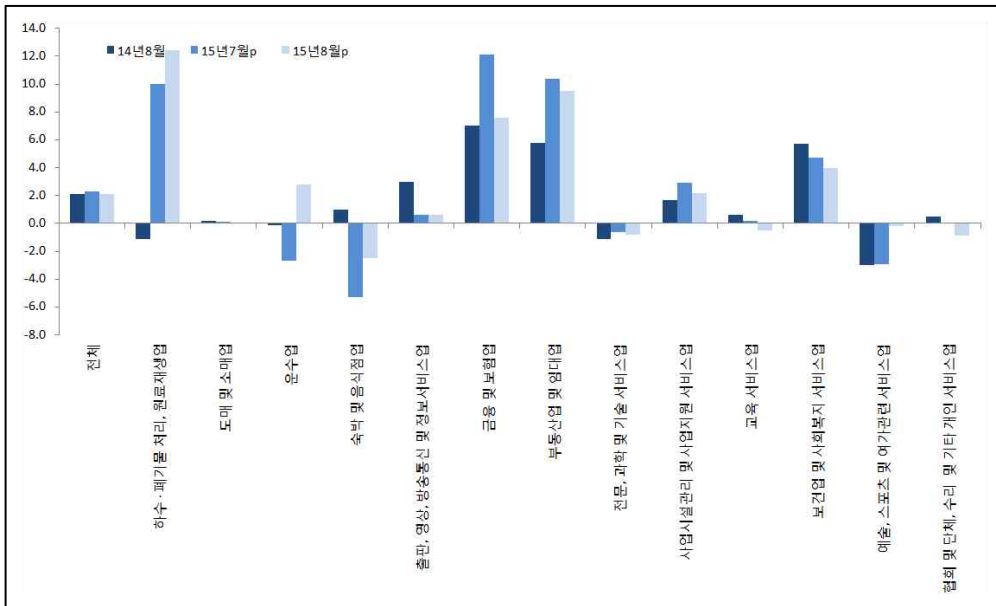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2015. 10.), 『2015년 8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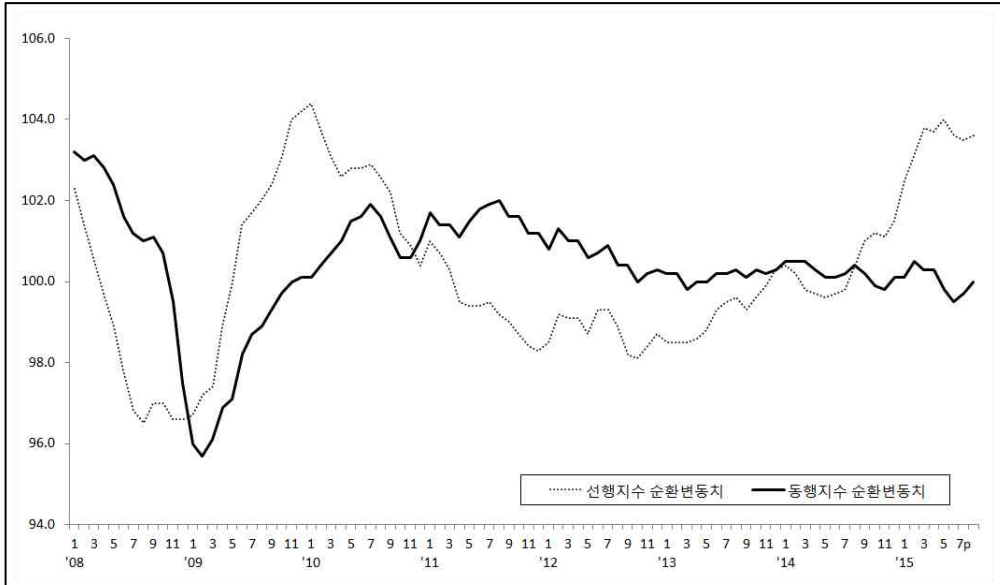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전년동분기와 같은 수준

- 2015년 3/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7,166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56천 명(1.3%)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650천 명으로 142천 명(0.9%) 증가하였고, 여성은 11,516천 명으로 214천 명(1.9%) 증가하였음.
- 2015년 3/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3.0%로 전년동분기와 동일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2%)은 전년동분기대비 0.3%p 하락, 여성(52.4%)은 전년동분기대비 0.4%p 상승하였음(그림 4 윗그림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전년동분기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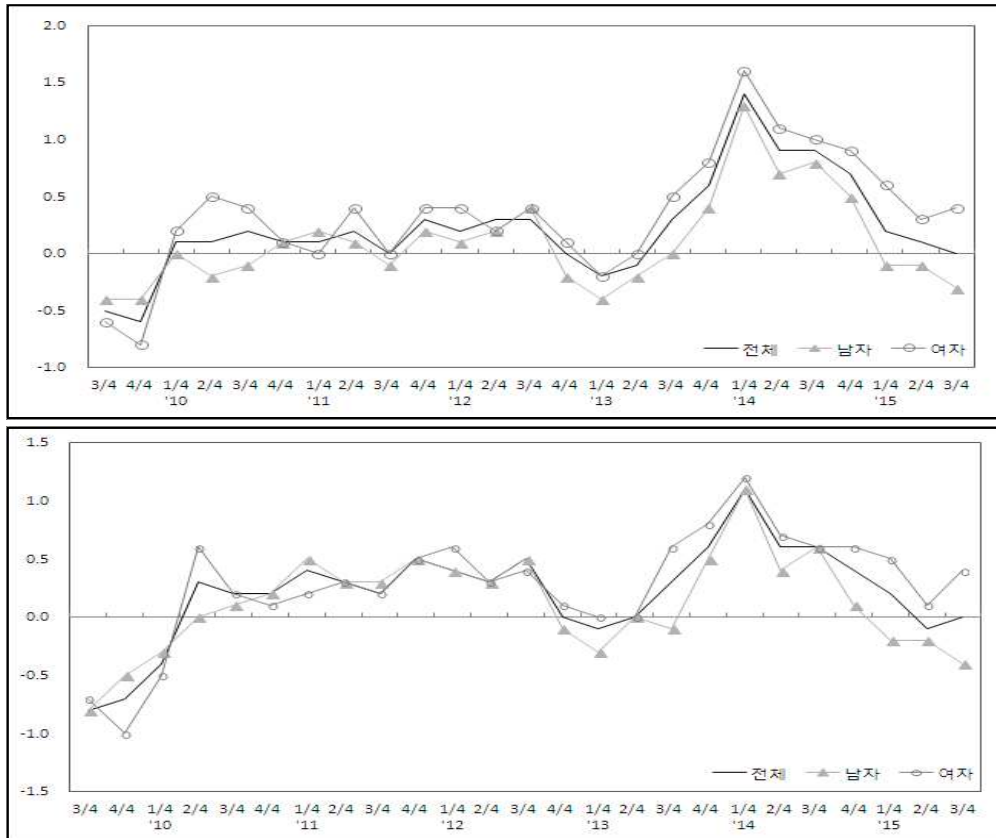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경제활동인구	25,945 (3.4)	26,767 (2.4)	26,810 (2.4)	26,766 (2.2)	26,622 (2.1)	26,356 (1.6)	27,140 (1.4)	27,166 (1.3)	27,064 (1.1)	27,129 (1.4)
참가율	61.3	63.1	63.0	62.8	62.4	61.5	63.2	63.0	62.8	62.9
취업자	24,913 (3.0)	25,790 (1.8)	25,927 (2.0)	25,917 (1.8)	25,767 (1.7)	25,267 (1.4)	26,098 (1.2)	26,237 (1.2)	26,141 (1.0)	26,264 (1.3)
고용률	58.8	60.8	60.9	60.8	60.4	59.0	60.7	60.9	60.7	60.9
실업자	1,031	977	884	849	854	1,089	1,042	929	923	866
실업률	4.0	3.7	3.3	3.2	3.2	4.1	3.8	3.4	3.4	3.2
비경제활동인구	16,397 (-2.6)	15,685 (-1.4)	15,760 (-1.4)	15,845 (-1.0)	16,066 (-0.6)	16,469 (0.4)	15,835 (1.0)	15,921 (1.0)	16,022 (1.4)	15,990 (0.9)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분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5. 10.), 『2015년 9월 고용동향』.

- 2015년 3/4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92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61천 명(1.0%) 증가함.
 -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44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32천 명(2.5%)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73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1천 명(0.3%) 증가하였음.
 -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505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8천 명 증가하였음.
 -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543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22천 명(8.6%) 증가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098천 명으로 112천 명(-2.7%) 감소하였음.
- 2015년 3/4분기 중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분기대비 변동없음.
 - － 남성의 고용률은 71.5%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여성의 고용률은 50.7%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음(그림 4 아랫그림 참조).
- 2015년 3/4분기 중 취업자는 26,23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10천 명(1.2%) 증가함.
 -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5,08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10천 명(0.7%)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1,14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99천 명(1.8%)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위)과 고용률(아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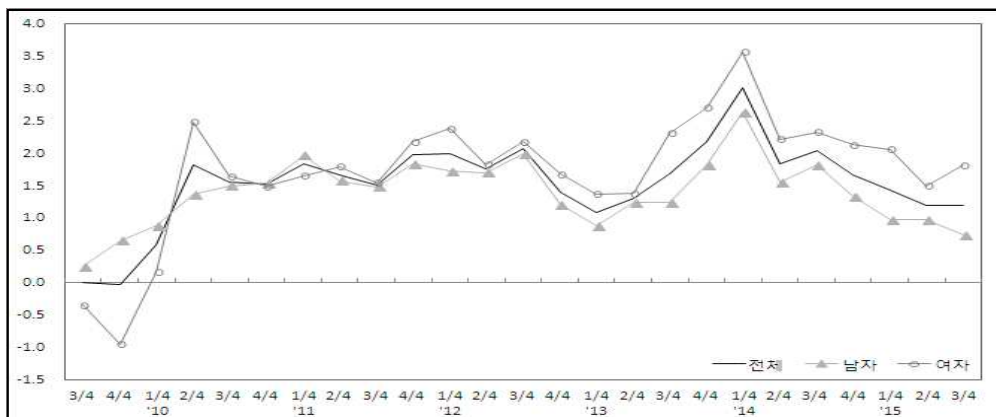
(단위: %p, 전년동분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증감 추이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5년 3/4분기 중 실업자는 92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5천 명(5.1%) 증가, 실업률은 3.4%로 전년동분기대비 0.1%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56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2천 명(6.0%)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6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5천 명(4.1%)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6%로 전년동분기대비 0.2%p 상승하였고, 여성은 3.2%로 전년동분기대비 0.1%p 상승하였음.

◆ 30대 제외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 증가

- 2015년 3/4분기 중 연령별 취업자는 15~29세(50천 명, 1.3%), 40~49세(1천 명, 0.0%), 50~59세(145천 명, 2.5%), 60세 이상(174천 명, 4.7%)에서 증가, 30~39세(-60천 명, -1.0%)에서 감소함.
 - 교육수준별 취업자는 전년동분기대비 고졸(93천 명, 0.9%), 대졸 이상(369천 명, 3.3%)에서 증가하였고, 중졸이하(-153천 명, -3.3%)에서 감소하였음.

〈표 3〉 연령별·교육수준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전년동분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전 체	24,913 (3.0)	25,790 (1.8)	25,927 (2.0)	25,917 (1.8)	25,767 (1.7)	25,267 (1.4)	26,098 (1.2)	26,237 (1.2)	26,141 (1.0)	26,264 (1.3)
15~29세	3,840 (2.6)	3,843 (1.4)	3,941 (2.7)	3,865 (1.4)	3,855 (1.5)	3,872 (0.8)	3,933 (2.3)	3,991 (1.3)	3,990 (0.9)	3,956 (2.4)
30~39세	5,672 (-0.1)	5,721 (-0.7)	5,741 (-0.1)	5,738 (-0.6)	5,722 (-0.5)	5,671 (0.0)	5,665 (-1.0)	5,681 (-1.0)	5,674 (-1.0)	5,671 (-1.2)
40~49세	6,645 (1.5)	6,704 (0.5)	6,678 (0.2)	6,690 (0.4)	6,700 (0.1)	6,598 (-0.7)	6,690 (-0.2)	6,679 (0.0)	6,651 (-0.3)	6,707 (0.3)
50~59세	5,684 (6.0)	5,878 (4.0)	5,891 (3.8)	5,915 (3.6)	5,926 (3.3)	5,861 (3.1)	6,016 (2.3)	6,036 (2.5)	6,001 (2.1)	6,049 (2.3)
60세 이상	3,072 (7.6)	3,643 (5.5)	3,676 (5.5)	3,709 (5.6)	3,565 (6.0)	3,265 (6.3)	3,793 (4.1)	3,850 (4.7)	3,826 (4.9)	3,882 (4.7)
중졸 이하	4,210 (-3.1)	4,664 (-4.8)	4,614 (-4.0)	4,627 (-4.3)	4,472 (-3.5)	4,070 (-3.3)	4,495 (-3.6)	4,461 (-3.3)	4,421 (-3.7)	4,467 (-3.5)
고졸	9,908 (2.6)	10,060 (2.1)	10,224 (3.3)	10,174 (2.8)	10,229 (3.0)	10,117 (2.1)	10,244 (1.8)	10,317 (0.9)	10,294 (0.8)	10,291 (1.1)
대졸 이상	10,795 (6.0)	11,067 (4.7)	11,089 (3.6)	11,115 (3.5)	11,067 (2.7)	11,080 (2.6)	11,360 (2.6)	11,458 (3.3)	11,426 (3.1)	11,506 (3.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분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5. 10.), 『2015년 9월 고용동향』.

◆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가 지속

○ 2015년 3/4분기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19,40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21천 명(2.8%)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6,836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11천 명(-3.0%)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686천 명으로 505천 명(4.1%), 일용근로자는 1,560천 명으로 14천 명(0.9%)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5,155천 명으로 2천 명 가량 증가하여 변동 폭이 미미하였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고용주 포함)는 5,623천 명으로 137천 명(-2.4%), 무급가족종사자는 1,212천 명으로 75천 명(-5.8%) 감소하였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 전년동분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전 체	24,913 (3.0)	25,790 (1.8)	25,927 (2.0)	25,917 (1.8)	25,767 (1.7)	25,267 (1.4)	26,098 (1.2)	26,237 (1.2)	26,141 (1.0)	26,264 (1.3)
비임금근로자	6,597 (0.3)	6,984 (-0.3)	7,047 (0.0)	6,999 (-0.5)	6,799 (-0.8)	6,509 (-1.3)	6,871 (-1.6)	6,836 (-3.0)	6,829 (-3.9)	6,796 (-2.9)
자영업자	5,512 (-0.1)	5,712 (-0.2)	5,760 (0.3)	5,742 (0.3)	5,625 (0.1)	5,463 (-0.9)	5,675 (-0.6)	5,623 (-2.4)	5,621 (-3.1)	5,593 (-2.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07 (0.0)	1,553 (1.4)	1,567 (3.7)	1,554 (3.1)	1,574 (5.5)	1,570 (4.2)	1,619 (4.2)	1,587 (1.3)	1,595 (0.8)	1,578 (1.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05 (-0.2)	4,159 (-0.9)	4,192 (-0.9)	4,188 (-0.7)	4,051 (-1.8)	3,893 (-2.8)	4,056 (-2.5)	4,037 (-3.7)	4,026 (-4.6)	4,015 (-4.1)
무급가족종사자	1,085 (2.5)	1,272 (-0.6)	1,287 (-1.7)	1,257 (-4.2)	1,175 (-4.9)	1,046 (-3.6)	1,195 (-6.1)	1,212 (-5.8)	1,208 (-7.4)	1,203 (-4.3)
임금근로자	18,316 (4.0)	18,806 (2.6)	18,880 (2.8)	18,918 (2.7)	18,968 (2.6)	18,758 (2.4)	19,227 (2.2)	19,401 (2.8)	19,312 (2.9)	19,468 (2.9)
상용근로자	11,985 (5.3)	12,175 (4.1)	12,181 (2.8)	12,213 (2.7)	12,280 (3.0)	12,341 (3.0)	12,507 (2.7)	12,686 (4.1)	12,675 (4.2)	12,757 (4.5)
임시근로자	4,835 (1.5)	5,063 (2.4)	5,153 (4.6)	5,138 (4.1)	5,076 (2.9)	4,918 (1.7)	5,066 (0.1)	5,155 (0.0)	5,106 (0.0)	5,170 (0.6)
일용근로자	1,496 (2.1)	1,567 (-6.6)	1,546 (-2.5)	1,568 (-2.3)	1,612 (-1.2)	1,500 (0.3)	1,654 (5.5)	1,560 (0.9)	1,531 (1.6)	1,541 (-1.7)
36시간 미만	3,593 (-35.4)	3,397 (-29.5)	5,229 (2.9)	3,528 (2.4)	3,659 (7.8)	3,689 (2.7)	3,661 (7.8)	4,848 (-7.3)	7,129 (-16.9)	3,663 (3.8)
36시간 이상	20,829 (15.1)	22,090 (9.3)	20,184 (1.9)	22,049 (1.7)	21,779 (0.7)	21,091 (1.3)	22,120 (0.1)	20,895 (3.5)	18,205 (10.8)	22,29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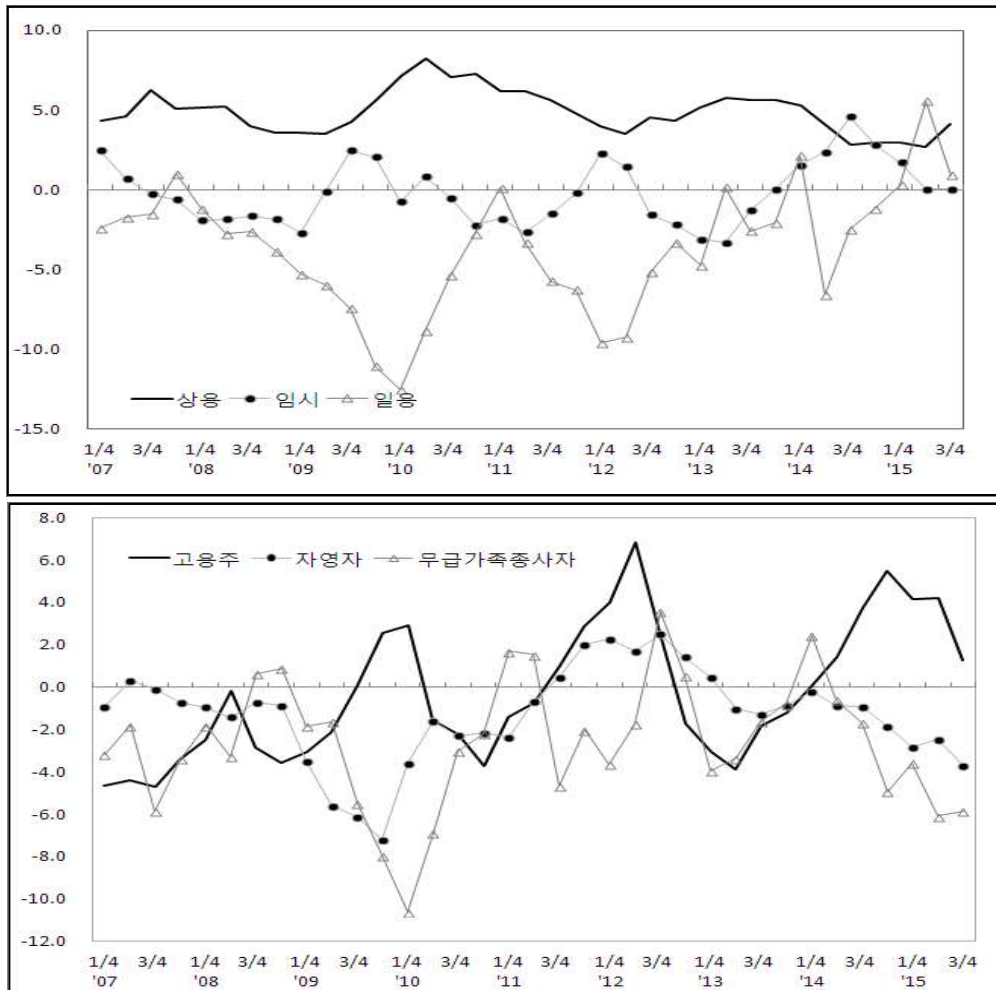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분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2015. 10.), 『2015년 9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위) 및 비임금근로자(아래)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2015년 3/4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848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81천 명(-7.3%)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895천 명으로 711천 명(3.5%) 증가하였음.

◆ 제조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

○ 2015년 3/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65천 명, 3.8%), 건설업(11천 명, 0.6%), 숙박 및 음식점업(86천 명, 4.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89천 명, 7.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5천 명, 10.6%) 등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09천 명, -6.8%), 교육서비스업(-11천 명, -0.6%) 등에서는 감소함.

〈표 5〉 산업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 전년동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전 산업	24,913 (3.0)	25,790 (1.8)	25,927 (2.0)	25,917 (1.8)	25,767 (1.7)	25,267 (1.4)	26,098 (1.2)	26,237 (1.2)	26,141 (1.0)	26,264 (1.3)
농림어업	1,179 (1.0)	1,631 (-3.3)	1,603 (-7.0)	1,609 (-7.4)	1,395 (-7.2)	1,092 (-7.4)	1,505 (-7.7)	1,494 (-6.8)	1,482 (-7.1)	1,489 (-7.5)
제조업	4,279 (3.0)	4,319 (3.3)	4,346 (4.7)	4,347 (4.1)	4,374 (3.0)	4,418 (3.2)	4,466 (3.4)	4,511 (3.8)	4,491 (3.6)	4,512 (3.8)
전기·가스· 증기·수도업	80 (-1.2)	80 (-16.7)	83 (-13.5)	86 (-6.5)	88 (0.0)	91 (13.8)	91 (13.8)	92 (10.8)	93 (10.7)	94 (9.3)
하수, 원료재생·복원	80 (17.6)	90 (32.4)	90 (20.0)	85 (14.9)	89 (12.7)	89 (11.3)	89 (-1.1)	89 (-1.1)	90 (-2.2)	89 (4.7)
건설업	1,683 (1.6)	1,813 (0.7)	1,833 (3.3)	1,839 (2.9)	1,854 (4.0)	1,756 (4.3)	1,857 (2.4)	1,844 (0.6)	1,820 (0.6)	1,838 (-0.1)
도소매업	3,774 (4.4)	3,744 (2.6)	3,799 (4.1)	3,808 (4.1)	3,848 (3.4)	3,848 (2.0)	3,775 (0.8)	3,763 (-0.9)	3,721 (-1.9)	3,763 (-1.2)
운수업	1,418 (1.8)	1,408 (-0.4)	1,400 (-1.8)	1,397 (-1.8)	1,402 (-1.3)	1,402 (-1.1)	1,410 (0.1)	1,415 (1.1)	1,422 (1.6)	1,413 (1.1)
숙박 및 음식점업	2,063 (7.5)	2,053 (6.2)	2,130 (6.5)	2,122 (6.2)	2,143 (5.7)	2,136 (3.5)	2,152 (4.8)	2,216 (4.0)	2,238 (4.8)	2,203 (3.8)
출판·영상· 방송통신 등	703 (2.8)	733 (5.2)	707 (1.1)	701 (1.2)	713 (3.6)	749 (6.5)	773 (5.5)	782 (10.6)	781 (11.6)	780 (11.3)
금융 및 보험업	854 (1.5)	847 (-3.3)	836 (-5.1)	830 (-4.3)	813 (-5.1)	788 (-7.7)	789 (-6.8)	787 (-5.9)	786 (-5.6)	793 (-4.5)
부동산 및 임대업	507 (6.1)	496 (4.2)	516 (6.0)	525 (6.9)	512 (2.4)	514 (1.4)	535 (7.9)	539 (4.5)	530 (2.9)	542 (3.2)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1,024 (-1.3)	1,017 (0.4)	1,028 (1.4)	1,018 (-1.5)	1,030 (0.8)	1,022 (-0.2)	1,029 (1.2)	1,064 (3.5)	1,065 (3.2)	1,066 (4.7)
사업서비스업	1,165 (1.1)	1,192 (-1.2)	1,168 (0.2)	1,157 (-1.6)	1,197 (2.5)	1,202 (3.2)	1,261 (5.8)	1,257 (7.6)	1,236 (5.5)	1,273 (10.0)

〈표 5〉의 계속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공공행정 등	925 (2.9)	1,001 (0.2)	980 (-1.1)	981 (-1.4)	923 (-5.1)	865 (-6.5)	960 (-4.1)	954 (-2.7)	950 (-2.5)	952 (-3.0)
교육서비스업	1,760 (4.4)	1,811 (3.4)	1,827 (2.2)	1,835 (3.4)	1,829 (3.6)	1,802 (2.4)	1,803 (-0.4)	1,816 (-0.6)	1,815 (-0.7)	1,834 (-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1,569 (8.1)	1,709 (8.9)	1,745 (9.1)	1,761 (9.5)	1,749 (9.6)	1,694 (8.0)	1,776 (3.9)	1,795 (2.9)	1,789 (2.8)	1,829 (3.9)
예술·스포츠· 여가	384 (1.6)	380 (-3.3)	403 (0.8)	405 (1.3)	407 (2.5)	412 (7.3)	438 (15.3)	431 (6.9)	439 (7.9)	423 (4.4)
협회·단체· 수리·기타	1,310 (-0.8)	1,319 (0.4)	1,295 (0.5)	1,277 (-1.1)	1,273 (-4.0)	1,267 (-3.3)	1,277 (-3.2)	1,276 (-1.5)	1,284 (-0.9)	1,258 (-1.5)
가구내 및 자가	130 (-26.1)	120 (-32.2)	111 (-36.9)	106 (-38.0)	103 (-34.4)	94 (-27.7)	85 (-29.2)	77 (-30.6)	77 (-31.3)	77 (-27.4)
국제 및 외국기관	11 (37.5)	13 (85.7)	16 (166.7)	16 (166.7)	17 (88.9)	18 (63.6)	17 (30.8)	20 (25.0)	19 (18.8)	21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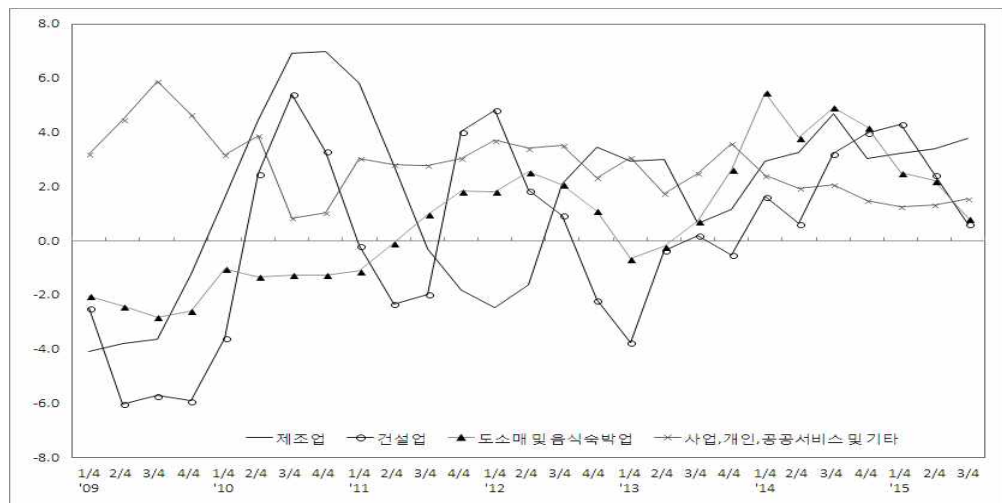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분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9차 개정 산업분류 기준.

자료: 통계청(2015. 10.), 『2015년 9월 고용동향』.

〈그림 7〉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조문경, 동향분석팀 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5년 7월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0% 상승
- 2015년 7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동월대비 4.0% 상승한 3,315천 원임.
 - 2015년 7월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8%, 3.9% 상승함.
 -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3,492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했는데, 이는 정액급여(3.6%)와 특별급여(3.1%)의 증가율이 컸던 데 기인함.
 -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5년 들어서는 2%대 증가율을 보임. 그러나 2015년 7월 현재 2개월 연속 3.6%를 기록하고 있음.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5년 1~7월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전년동평균대비 3.3% 상승함.
 - 2015년 1~7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평균대비 3.3% 상승한 3,252천 원임.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임금총액(3,435천원, 3.0%)은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으나 정액급여(3.1%)는 전년동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함.
- 2015년 7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함.
 - 2015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100.0)은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상승폭이 둔화된 가운데 명목임금 상승폭은 확대되어 실질임금 상승률은 3.2%를 기록함.
 - 2015년 1~7월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전년동평균대비 2.7% 상승함. 동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6% 상승에 그친 반면, 명목임금 상승폭이 확대된 데 기인함.

〈표 6〉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0=100.0)

	2012	2013	2014	2015				
				1~7월		1~7월		
				평균	7월	평균	7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995 (5.3)	3,111 (3.9)	3,190 (2.5)	3,148 (2.3)	3,188 (1.8)	3,252 (3.3)	3,315 (4.0)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178 (5.3)	3,299 (3.8)	3,378 (2.4)	3,333 (2.4)	3,365 (1.5)	3,435 (3.0)	3,492 (3.8)
	정액급여	2,470 (5.5)	2,578 (4.4)	2,660 (3.2)	2,647 (3.2)	2,672 (3.3)	2,729 (3.1)	2,769 (3.6)
	초과급여	181 (1.0)	184 (1.7)	201 (9.3)	198 (8.9)	200 (10.3)	216 (8.7)	213 (6.8)
	특별급여	527 (5.8)	537 (1.8)	516 (-3.7)	488 (-4.2)	494 (-10.1)	490 (0.4)	509 (3.1)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93 (6.4)	1,377 (6.5)	1,387 (0.7)	1,392 (1.3)	1,393 (0.5)	1,414 (1.6)	1,448 (3.9)	
소비자물가지수	106.3 (2.2)	107.8 (1.2)	109.0 (1.3)	109.0 (1.4)	109.3 (1.6)	109.6 (0.6)	110.0 (0.7)	
실질임금증가율	3.1	2.5	1.3	0.9	0.3	2.7	3.2	

-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 2) 1~7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 2015년 9월 협약임금 인상률 4.1%

○ 2015년 9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2%로 2014년 9월 인상률(4.4%)보다 0.3%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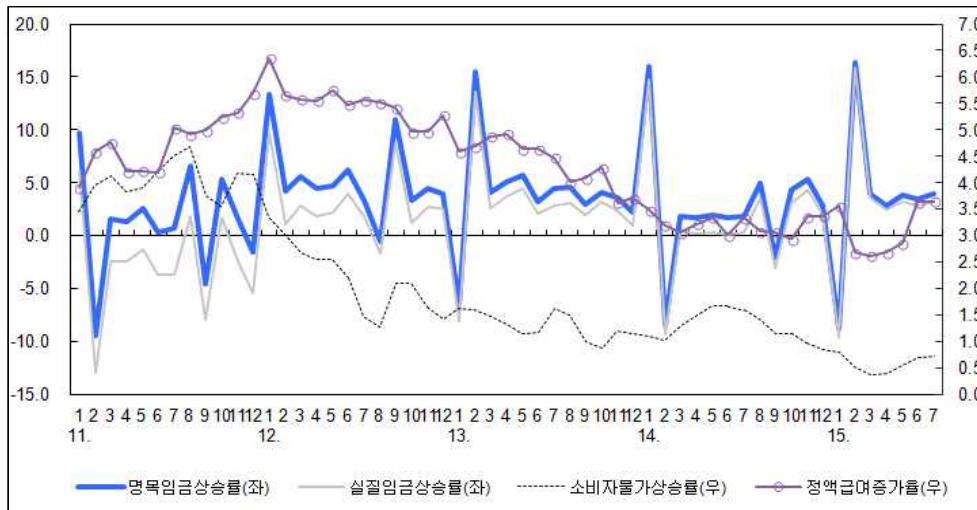
– 2015년 9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59.3%로 전년동월(45.2%)보다 높은 수준임.

◆ 2015년 7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5년 7월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산업은 광업(9.9%, 3,951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운수업(9.1%, 3,105천 원),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8.4%, 2,434천 원), 부동산 및 임대업(7.6%, 2,507천 원), 여가관련 서비스업(7.2%, 2,639천 원) 부문에서 임금상승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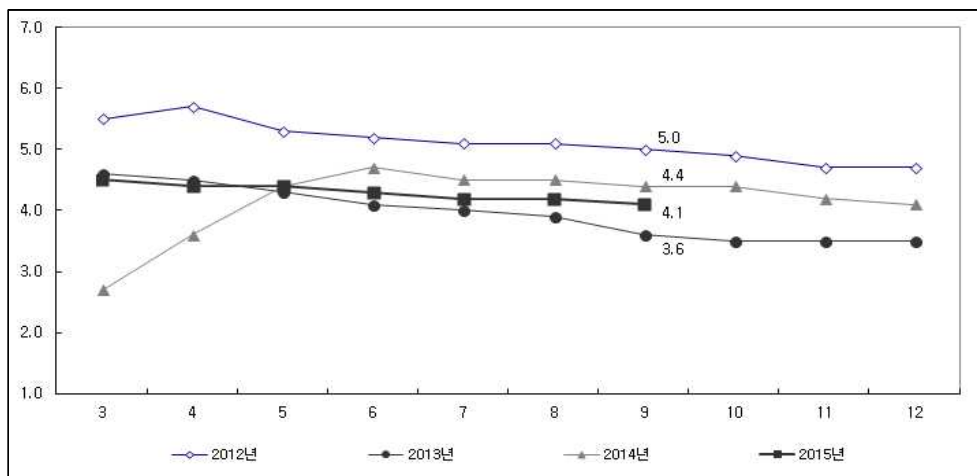
(단위: %, 2010=10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0.8%, 2,752천 원),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1%, 3,903천 원), 숙박 및 음식점업(1.3%, 1,741천 원), 도매 및 소매업(1.8%, 3,233천 원) 부문에서는 전 산업 평균 임금상승률을 밑도는 0~1%대 상승률을 보임.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7월 평균		7월	
			1~7월 평균	7월	1~7월 평균	7월
전 산업	3,111 (3.9)	3,190 (2.5)	3,148 (2.3)	3,188 (1.8)	3,252 (3.3)	3,315 (4.0)
광업	3,557 (2.5)	3,480 (-2.1)	3,514 (-2.8)	3,595 (-1.1)	3,670 (4.4)	3,951 (9.9)
제조업	3,371 (4.7)	3,506 (4.0)	3,459 (4.3)	3,481 (1.6)	3,556 (2.8)	3,586 (3.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542 (2.9)	5,554 (0.2)	5,404 (2.2)	4,813 (-2.7)	5,603 (3.7)	4,903 (1.9)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743 (3.3)	2,812 (2.5)	2,756 (3.0)	2,760 (1.6)	2,871 (4.2)	2,909 (5.4)
건설업	2,414 (6.2)	2,497 (3.4)	2,477 (2.5)	2,473 (4.0)	2,585 (4.4)	2,557 (3.4)
도소매업	3,168 (1.5)	3,206 (1.2)	3,151 (1.2)	3,176 (1.4)	3,218 (2.1)	3,233 (1.8)
운수업	2,732 (5.5)	2,805 (2.7)	2,716 (1.3)	2,846 (1.2)	2,880 (6.0)	3,105 (9.1)
숙박 및 음식점업	1,772 (1.9)	1,785 (0.7)	1,734 (0.5)	1,720 (1.4)	1,791 (3.3)	1,741 (1.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36 (2.2)	3,905 (-0.8)	3,875 (-2.4)	3,862 (-1.6)	3,976 (2.6)	3,903 (1.1)
금융 및 보험업	5,058 (1.4)	5,234 (3.5)	5,177 (1.1)	5,119 (0.6)	5,474 (5.7)	5,320 (3.9)
부동산 및 임대업	2,269 (3.4)	2,323 (2.3)	2,299 (1.8)	2,330 (-2.0)	2,465 (7.2)	2,507 (7.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243 (3.2)	4,419 (4.2)	4,303 (5.3)	4,231 (4.4)	4,369 (1.5)	4,509 (6.6)
사업서비스업	1,883 (5.2)	1,924 (2.2)	1,897 (2.1)	1,906 (1.7)	1,980 (4.4)	2,003 (5.1)
교육서비스업	3,261 (4.4)	3,375 (3.5)	3,409 (1.8)	3,911 (3.5)	3,545 (4.0)	4,172 (6.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62 (2.0)	2,700 (1.4)	2,639 (-0.2)	2,730 (2.9)	2,749 (4.1)	2,752 (0.8)
여가관련 서비스업	2,326 (5.2)	2,398 (3.1)	2,386 (3.4)	2,461 (0.1)	2,447 (2.6)	2,639 (7.2)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226 (-0.1)	2,249 (1.0)	2,206 (-0.2)	2,245 (1.6)	2,268 (2.8)	2,434 (8.4)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1~7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제조업 임금상승률 또한 전년동월대비 3.0% 상승에 그침.

○ 2015년 1~7월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전 산업에서 전년동평균대비 증가함.

－ 2015년 1~7월 평균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7.2%, 2,465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운수업(6.0%, 2,880천 원), 금융 및 보험업(5.7%, 5,474천 원), 운수업(5.5%) 순으로 임금상승률이 높았음.

－ 다만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 4,369천 원), 도매 및 소매업(2.1%, 3,218천 원), 여가관련 서비스업(2.6%, 2,447천 원),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2.6%, 3,976천 원),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8%, 2,268천 원), 제조업(2.8%, 3,556천 원) 부문은 전 산업 평균 임금상승률을 밑도는 1~2%대 상승률을 보임.

- ◆ 2015년 7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평균 임금총액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3.7%, 3.3% 상승
- 2015년 7월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을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사업체의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소기업과 대규모 사업체 간 임금격차는 여전히 전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7월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 또한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에서 모두 상승함.
 - 2015년 7월 기준 5~299인 중소기업의 1인당 상용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한 3,136천 원임.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1인당 상용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한 4,909천 원임.
- 2015년 7월 비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 또한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증가함.
 -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한 1,600천 원, 중소기업의 비상용근로자의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한 1,436천 원임.
- 2015년 1~7월 평균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함.
 - 중소기업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3,068천 원)은 전년동평균대비 3.6% 상승하였고,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4,942천 원)은 전년동평균대비 4.5% 상승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체에서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1~7월 평균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주로 정액급여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음. 하지만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1~7월 평균)의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중소기업 사업체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의 정액급여 증가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사업체 규모별로 1~7월 평균 비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을 보면, 중소기업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는 전년동평균대비 1.7% 상승한 1,418천 원인 반면, 대규모 사업체 비상용근로자는 1.0% 상승한 1,369천 원임.

〈표 8〉 사업체규모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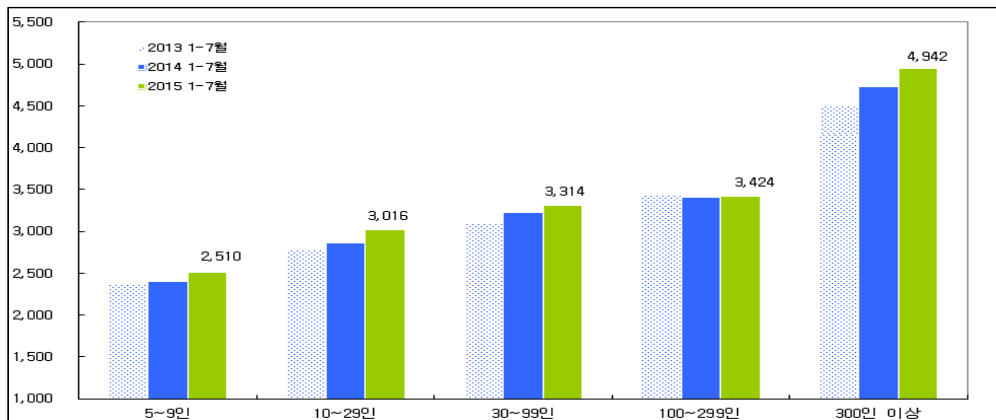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7월 평균	7월		
전 규모 (5인 이상)	전 체	3,111 (3.9)	3,190 (2.5)	3,148(2.3)	3,188(1.8)	3,252(3.3)	3,315(4.0)
	상용임금총액	3,299 (3.8)	3,378 (2.4)	3,333(2.4)	3,365(1.5)	3,435(3.0)	3,492(3.8)
	정액급여	2,578 (4.4)	2,660 (3.2)	2,647(3.2)	2,672(3.3)	2,729(3.1)	2,769(3.6)
	초과급여	184 (1.7)	201 (9.3)	198(8.9)	200(10.3)	216(8.7)	213(6.8)
	특별급여	537 (1.8)	516 (-3.7)	488(-4.2)	494(-10.1)	490(0.4)	509(3.1)
	비상용임금총액	1,377 (6.5)	1,387 (0.7)	1,392(1.3)	1,393(0.5)	1,414(1.6)	1,448(3.9)
5~299인	소 계	2,764 (3.8)	2,836 (2.6)	2,791(2.0)	2,861(2.5)	2,901(3.9)	2,968(3.7)
	상용임금총액	2,938 (3.7)	3,008 (2.4)	2,962(2.0)	3,030(2.0)	3,068(3.6)	3,136(3.5)
	정액급여	2,433 (4.3)	2,504 (2.9)	2,490(2.9)	2,514(2.9)	2,567(3.1)	2,597(3.3)
	초과급여	160 (3.0)	172 (7.5)	170(6.8)	175(8.5)	182(7.2)	184(5.5)
	특별급여	345 (-0.3)	332 (-3.6)	301(-6.9)	341(-6.7)	319(5.7)	355(4.0)
	비상용임금총액	1,392 (7.0)	1,390 (-0.1)	1,395(0.5)	1,383(-0.6)	1,418(1.7)	1,436(3.9)
300인 이상	소 계	4,447 (3.7)	4,678 (5.2)	4,591(4.6)	4,648(4.6)	4,790(4.3)	4,800(3.3)
	상용임금총액	4,583 (3.6)	4,827 (5.3)	4,730(4.8)	4,751(4.4)	4,942(4.5)	4,909(3.3)
	정액급여	3,093 (4.3)	3,272 (5.8)	3,234(5.1)	3,325(7.4)	3,395(5.0)	3,456(4.0)
	초과급여	270 (-1.6)	316 (16.9)	305(15.4)	302(20.0)	353(15.7)	328(8.6)
	특별급여	1,220 (3.0)	1,239 (1.5)	1,190(1.6)	1,124(-6.6)	1,194(0.3)	1,124(0.0)
	비상용임금총액	1,219 (0.8)	1,354 (11.1)	1,356(11.4)	1,542(16.1)	1,369(1.0)	1,600(3.8)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1~7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10〉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1~7월 평균 임금총액(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주: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5년 7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한 186.1시간
(월력상 근로일수는 23일로 전년동일과 같음)
- 2015년 7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8시간 증가한 186.1시간임.
 - 상용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근로시간(191.8시간)과 소정실근로시간(179.1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4%, 0.6% 증가한 반면, 초과근로시간(12.7시간)은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함.
 - 비상용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근로시간은 125.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함.
- 2015년 1~7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2% 증가한 172.8시간임.
 - 2015년 1~7월 평균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총근로시간(178.6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3% 증가한 반면, 비상용근로자(114.3시간)는 전년동평균대비 3.1% 감소함.

〈표 9〉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7월 평균		7월	
			1~7월 평균	7월	1~7월 평균	7월
전체 근로시간	172.6 (-1.0)	171.4 (-0.7)	172.4 (-1.1)	185.3 (0.2)	172.8 (0.2)	186.1 (0.4)
상용 총근로시간	178.1 (-1.0)	177.1 (-0.6)	178.1 (-0.9)	191.1 (0.1)	178.6 (0.3)	191.8 (0.4)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5.6 (-1.0)	164.1 (-0.9)	165.1 (-1.4)	178.1 (-0.3)	165.7 (0.4)	179.1 (0.6)
상용 초과근로시간	12.5 (-2.3)	12.9 (3.2)	13.0 (5.7)	13.0 (5.7)	13.0 (0.0)	12.7 (-2.3)
비상용근로시간	122.5 (0.2)	117 (-4.5)	118.0 (-5.1)	126.7 (-1.6)	114.3 (-3.1)	125.7 (-0.8)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1~7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7월 산업별 평균 총근로시간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8%, 181.2시간),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4%, 177.5시간), 금융 및 보험업(-0.4%, 179.7시간), 광업(-0.2%, 191.7시간)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함.
 - 이외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평균 총근로시간 증가함. 특히 교육서비스업(1.1%, 168.7시간)의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여가관련 서비스업(1.0%, 172.6시간),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0%, 179.5시간) 순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5년 7월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204.3시간),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200.1시간)으로 나타남.
- 2015년 1~7월 산업별 평균 총근로시간은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등 몇몇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동평균대비 증가함.
 - 부동산 및 임대업(1.2%, 192.7시간)은 근로시간이 전년동평균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이며,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으로 나타남. 이외 근로시간이 많이 증가한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0.9%, 171.5시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0.7%, 165.2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0.7%, 174.9시간)으로 나타남.

〈표 10〉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3	2014	2015			
			1~7월 평균	7월		
전 산업	172.6(-1.0)	171.4(-0.7)	172.4(-1.1)	185.3(0.2)	172.8(0.2)	186.1(0.4)
광업	180.6(-2.5)	179.4(-0.7)	179.9(-1.3)	192.1(0.8)	179.7(-0.1)	191.7(-0.2)
제조업	185.0(-0.8)	185.4(0.2)	187.4(0.5)	200.0(1.7)	187.0(-0.2)	200.1(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3.4(-1.2)	170.5(-1.7)	171.1(-2.6)	184.2(0.5)	171.5(0.2)	181.2(-1.6)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2.0(-1.5)	177.8(-2.3)	178.6(-2.9)	190.6(-3.3)	177.7(-0.5)	191.3(0.4)
건설업	152.7(0.1)	148.5(-2.8)	149.3(-4.0)	159.1(-1.7)	147.4(-1.3)	159.9(0.5)
도소매업	173.4(-0.6)	172.3(-0.6)	173.1(-1.1)	186.5(-0.2)	173.6(0.3)	186.6(0.1)
운수업	177.8(-2.1)	173.1(-2.6)	173.4(-3.1)	183.6(-2.1)	173.7(0.2)	184.6(0.5)
숙박 및 음식점업	177.3(-5.0)	175.2(-1.2)	173.7(-1.3)	179.7(0.8)	174.9(0.7)	181.2(0.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0(-0.5)	161.9(-0.7)	163.5(-0.7)	177.7(0.1)	164.5(0.6)	179.5(1.0)
금융 및 보험업	162.7(-0.4)	163.4(0.4)	164.6(-0.1)	180.4(0.7)	164.8(0.1)	179.7(-0.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1.5(-1.0)	190.1(-0.7)	190.4(-1.7)	202.6(0.1)	192.7(1.2)	204.3(0.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9(-0.8)	163.3(-0.4)	164.0(-1.0)	178.3(0.1)	165.2(0.7)	179.4(0.6)
사업서비스업	172.3(-0.5)	171.9(-0.2)	172.4(-0.7)	185.0(-0.6)	172.5(0.1)	185.9(0.5)
교육서비스업	150.6(-0.3)	152(0.9)	153.7(1.1)	166.8(-0.8)	152.6(-0.7)	168.7(1.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2.0(-1.6)	169.6(-1.4)	170.0(-2.4)	182.8(-1.7)	171.5(0.9)	183.7(0.5)
여가관련 서비스업	158.0(-0.1)	158.9(0.6)	159.7(0.7)	170.9(2.3)	160.3(0.4)	172.6(1.0)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7.5(-0.8)	162.9(-2.7)	164.2(-3.1)	180.1(-0.5)	163.1(-0.7)	177.5(-1.4)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1~7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임.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반면, 전년동평균대비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1.3%, 147.4시간)이며, 건설업은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던 산업으로도 나타남. 이외에도 근로시간이 감소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0.7%, 152.6시간),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7%, 163.1시간), 제조업(-0.2%, 187.0시간) 등 일부 산업임.

○ 2015년 7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중소기업에서만 전년동월대비 0.5% 증가함.

－ 중소기업 사업체(5~299인)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5% 증가한 186.5시간임. 반면, 대규모 사업체(300인 이상)에서의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과 같은 184.2시간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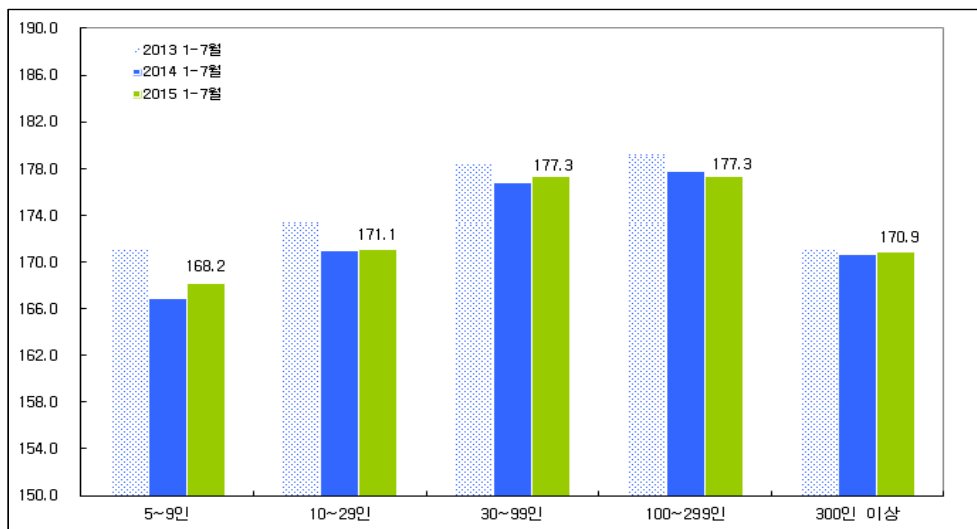
－ 중소기업 사업체를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1% 증가한 181.0시간, 10~29인 사업체는 0.4% 증가한 185.0시간, 30~99인 사업체는 0.8% 증가한 190.0시간을 기록함. 반면, 100~2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오히려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했으나 중소기업 사업체 중 근로시간(190.5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1~7월 평균 사업체 규모별 총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증가함.

－ 중소기업 사업체(5~299인)의 1~7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5% 증가한 173.3시간이며,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는 0.8% 증가한 168.2시

[그림 11] 사업체규모별 1~7월 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주: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간, 10~29인 사업체는 0.1% 증가한 171.1시간, 30~99인 사업체는 0.3% 증가한 177.3시간인 반면, 100~2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3% 감소한 177.3시간으로 나타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1~7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1% 증가한 170.9시간으로 나타남.

(김복순, 동향분석팀 전문위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9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649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9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673건)보다 24건 적은 수치임.
- 지난 9월 조정성립률 51.4%
 - 지난 9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조정성립률 52.6%에 비해 1.2% 낮아진 수치임.

〈표 11〉 2015년, 2014년 9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5. 9	649	617	259	103	156	245	33	212	31	82	32	51.4
2014. 9	673	635	273	116	157	246	33	213	41	75	38	52.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조사건

- 지난 9월 복수노조조사건 접수건수는 464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9월 복수노조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285건)보다 179건 많은 수치임.
 -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34.5%(153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65.5%(290건)를 차지함.

〈표 12〉 2015년, 2014년 9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5. 9	464	443	153	0	73	109	108	0	20
2014. 9	285	264	76	4	63	32	89	0	2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분야 3대 학회, 임금피크제 모델 안 제시

-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분야 3대 학회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는 지난달 15일 금융·제약·조선·도소매·자동차 부품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발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음.
 - 3대 학회의 모델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기업부담과 청년고용 위축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학회 차원에서도 임금피크제에 주목한 것이라고 밝힘.
 - 고용노사관계학회의 조준모 학회장은 “궁극적으로는 정년연장에 따른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이 지향점이지만,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등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모델안은 동종업계 사례들과 함께 제시되어 개별 기업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함.
- 5개 업종에 대한 임금피크제 모델안은 다음과 같음.
 - 금융업 임금피크제는 높은 연공성과 고임금 구조 등을 감안하여 임금조정률은 높게 설정하되, 은행업과 기타 금융업으로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됨.
 - 제약업은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통상적인 임금조정 수준과 기존 도입사례가 유사하여 이를 토대로 제시됨.
 - 조선업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기업들과 협력사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인사노무관리방식도 영향을 받으므로 선도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상황에 맞게 설계하는 방안이 제시됨.
 - 도소매업은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통상적인 임금조정 수준과 기존 도입사례가 유사하여 이를 토대로 제시되었으며, 그 유형은 세부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밝힘.
 - 자동차부품업은 업종 특성상 중소기업이 많은 점과 기존 도입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시됨.

〈표 13〉 업종별 임금피크제 도입실태와 모델안 비교

		금융	제약	조선	도소매	자동차부품
도입 실태	평균 정년	59.3세	58.3세	57.6세	58세	58.4세
	조정 기간	4.3년	3.4년	2.7년	4.2년	2.4년
	조정률 (연평균)	39.6%	21%	16.3%	19.5%	17.9%
	조정 방식	단계적 조정 (84.4%)	단계적 조정 (63.6%)	단계적 조정 (63.2%)	단계적 조정, 조정 후 유지	단계적 조정 (58.3%)
모 델 안	적용 대상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 캐셔, 진열 등 제외	전체 근로자
	조정 시기	기존정년 이전	기존정년 이후	기존정년 이후	기존정년 이후	기존정년 이후
	조정률 (연평균)	은행 40~50%, 보험 등 25~30%	20% 내외 일반적	10~20% 내외 일반적	15~20% 내외 일반적	15~20% 내외 일반적
	조정 방법	단계적 조정	단계적 조정	단계적 조정	단계적 조정	단계적 조정
	복리 후생	현행 유지				
	승급 / 베이스업	정기승급 미반영 / 베이스업 노사협의로 반영 가능				
	특징	업권별로 조정률이 상이함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음	인력 부족 등으로 조정률이 높지 않음	세부 업종이 많아 유형이 다양함	중소기업이 많고, 조정률이 높지 않음

자료: 고용노동부,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안 발표」, 2015.10.

○ 고용노동부와 3개 학회가 지난달 15일 금융·제약·조선·도소매·자동차 부품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정부가 학회를 앞세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성명을 통해 비판함.

–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모델 발표는 정부가 노사정협의당시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한 합의를 무시한 것이고, 모델안을 마련하기 전에 노사정 공동으로 어떠한 토론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함.

◆ 최저임금위원회, 5개 분야·16개 제도개선 의제 집중 논의

- 최저임금위원회는 하반기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저임금 관련 제도적 현안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 － 제도개선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노·사·공익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금년 12월 말까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임.
 - － 노사가 제출한 중장기 과제를 5개 분야 16개 의제로 정리하였음.
 - － 제도개선위원회의 박준성 위원장은 “위원회가 갈등의 수위를 낮추고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심의를 하려면 제도의 현실적합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어려움이 없진 않겠지만 접점을 잘 찾아 선진국형 최저임금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 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근골격계질환 주의보

-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근골격계질환은 매년 5천명 이상이 발생(업무상질병자 10명 중 7명)하였고, 산업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군으로 나타남.
 - － 신체 일부분의 과도한 사용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이 업무상질병자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자 5천 174명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5.8%로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업(36.9%), 건설업(10.8%) 순으로 나타남.
 - －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골격계질환자의 66.3%가 발생했으며, 연령별 발생 비율은 40대가 31.1%, 그리고 50대 이상의 장년층은 41.5%로 나타남.
-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자동차 제조 등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약 5천 700여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점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음.
 - － 올해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사업장 3,353개소에 대하여 현재까지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도 하고 있음.

〈표 14〉 최저임금위원회의 5개 분야 16개 제도개선 의제

5개 분야	16개 의제	
	노동계	경영계
1.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공익위원 노·사 단체 추천 ② 최저임금위원회 역할 강화	① 최저임금 위원수 및 적용주기 조정 ② 최저임금위원회 예산 및 조직 확대
2.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결정방식	③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 ④ 생계비 통계의 공신력 확보	③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
3. 최저임금 산입범위		④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⑤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정비 및 지역별 택시 최저임금 산출
4. 최저임금의 종류		⑥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도 도입 ⑦ 직능별·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화 ⑧ 수습근로자, 감시단속근로자 감액규정 재검토
5. 최저임금 법 준수 및 실효성 확보	⑤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⑥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제도 도입 ⑦ 공공부문의 선도적 준수대책 제시 ⑧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방안 마련 및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으로 입찰계약제도 개편	

자료: 고용노동부, 「13차 전원회의 1차 제도개선위원회」, 2015.10.

〈표 15〉 최근 5년간 업무상질병자 및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상황

	2010	2011	2012	2013	2014
업무상질병자	7,803명	7,247명	7,472명	7,627명	7,678명
근골격계질환자 (점유율)	5,502명 (70.51%)	5,077명 (70.06%)	5,327명 (71.29%)	5,446명 (71.40%)	5,174명 (67.39%)

주: 업무상질병은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근골격계질환 조심하세요」, 2015.10.

〈표 16〉 2014년 산업별 근골격계질환자 발생비율

	합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의 사업)	건설업	운수·창고 · 통신업	농·임· 광·어업	금융· 보험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근골격계 질환자	5,174명 (100%)	2,368명 (45.8%)	1,908명 (36.9%)	559명 (10.8%)	220명 (4.3%)	89명 (1.7%)	27명 (0.5%)	3명 (0.1%)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근골격계질환 조심하세요」, 2015.10.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근골격계질환은 2010년 이후 매년 5천명대 수준으로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년근로자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의 근골격계질환예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체계적 예방활동이 요구된다.”고 밝힘.

◆ 민주노총, 공공노동자 파업대회 개최

- 민주노총은 지난달 15일 대학로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1만5천여명(노동조합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노동자 파업 대회’를 개최함.
 -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약 정책 중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압 및 성과연봉제·퇴출제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선공약 연내 완전 이행 등 3대 요구사항 이행을 정부에 촉구함.
 - 국제공공노련·노르웨이지역정부공공서비스노조·독일서비스노조·일본지방자치단체노조 등 국제 노동단체들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에 우려를 나타냄.
 -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강행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 가이드라인 발표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공노동자들이 강력한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를 심판하는 11월 민중총궐기와 12월 노동개약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에 공공노동자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힘.

◆ 국제노동기구(ILO) 189개 협약 중 한국은 비준협약 27개에 불과

- 한국ILO협회가 주관한 ‘한국 ILO 가입과 25년의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에 가입하였고 지난해 6월 정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나, 국제노동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
 - 우리나라의 비준협약은 ILO가 권고한 189개 협약 가운데 27개에 불과함.
 - 이는 ILO 185개 회원국 평균 비준협약 42개(지난해 말 기준) 보다 적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73개)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임.

-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만 비준한 상태로,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강제근로 철폐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및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등임.
- 한 전문가는 “오늘날 세계화 추세에서 노동 분야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한국 노동외교의 핵심 속성은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ILO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개선할 점이 많기에 노동법·노사관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 한국 ILO협회 권중동 회장은 “현 시대는 인간다운 노동과 노동의 존엄성을 요구하고 있고 ILO는 이를 위해 디센트 워크(Decent Work: 양질의 품위 있는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것이 실현될 때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함.

◆ 임금피크제, 민간으로 확산과 노사갈등 발생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21개 그룹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LG·롯데·포스코 등 11개 대기업 그룹들은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함.
 -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나,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서 실시하는 그룹들이 절반 밖에 안 된다.”라며, “노사 협력이 절실한 때”라고 지적함.
- 그러나, 일부 대기업에서는 본사 방침으로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음.
 -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진행 중인 임금협상에서 임금피크제 시행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결의대회를 갖고 회사의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함.
 - 사측이 내놓은 안은 법정 정년연장에 따라 내년부터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55세부터 매년 기본급의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임.
 - 또한, 사측은 교섭 석상에서 “노조가 본사 방침을 수용하지 않으면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짐.
 - 한화 갤러리아 노동조합 위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동자들의 정년을 늘리자는 것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의 개정 취지인데, 회사는 임금 삭감만을 원하고 있다.”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함. **KLI**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

〈표 17〉 주요 대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그룹명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삼성	- '16년 전 계열사 시행
현대자동차	- 전 계열사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협상 중
SK	-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위커텔 등 대부분 계열사 도입 완료 - 나머지 계열사 연내 도입 추진 협의 중
LG	- 그룹 전체 계열사가 임금피크제 시행 중 - LG전자 등 현재 정년을 58세로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전자계열은 정년기준을 60세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
롯데	- 2016년부터 전 계열사 시행(롯데제과, 롯데홈쇼핑 기 시행 중)
포스코	- 포스코 캠펙, 포스코강관 등 '16년부터 임금피크제 확대(58세 → 60세) 적용 (56세부터 종전 임금의 90%, 57세는 80%, 58세 이후 70% 지급) - '16년까지 전 계열사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
GS	- GS칼텍스, GS리테일, GS에너지, GS홈쇼핑, GS E&R 등은 이미 시행 중 - '16년부터 모든 계열사로 확대 시행
현대중공업	- 조선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는 기 시행 중 - '16년 이후 시행 계열사 확대 협의 중
한진	- 대한항공, 한진해운, (주)한진 등 전 계열사 '16년 시행(노사합의 완료),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일부 계열사는 '17년 시행
한화	- 한화그룹은 총 27개 계열사 중 (주)한화, 한화케미칼, 한화첨단소재 등 21개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16년부터 시행 예정 -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갤러리아 등 3개 사는 노사협상 진행 중 - 한화역사, 한화자산운용 등 소규모 2개 사는 '16년 상반기 중 도입하여 '17년 1월 시행 예정. - 한화증권은 개별연봉제 시행 중으로 도입이 필요치 않음.
KT	- KT, Kt is, Kt cs 등은 '15년 도입 및 시행 중, - KT service(북부/남부) '16년 시행 예정 - 나머지 계열사 도입 검토 중
두산	-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주요 계열사 임금피크제 조기시행 중 - 미시행 일부 계열사는 '16년 1월부터 시행(노사합의 완료)
신세계	- '15년 상반기부터 전 계열사 도입/시행 중
CJ	- '16년 전 계열사 시행
LS	- '07년 LS전선을 시작으로 '15년 10월 현재 6개 계열사 도입 완료 - '16년 전 계열사로 확대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금호아시아나	-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이미 시행 중 - 미시행 계열사는 '16년, '17년 시행을 위해 관련 절차 진행 중
대림	- '16년부터 전 계열사 시행(300인 미만 사업장은 '17년부터 시행)
동부	- 300인 이상 전 계열사 2016년 도입 예정(노사협의 중) - 300인 미만 계열사(자산운용, 저축은행)는 2017년 도입 예정
현대	-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경제연구원, 현대유엔아이 '16년부터 시행 - 기타 계열사는 도입 검토 중
OCI	- OCI(주) 2010년 시행, OCI머티리얼즈(주) 2014년 시행, (주)씨알이 2010년 시행, OCI정보통신 2011년 시행, (주)OCI에스이 2014년 시행
대우건설	- '15년 11월 말까지 도입하기로 노사합의 후 구체적인 사항 협의 중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요 그룹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2015.10.